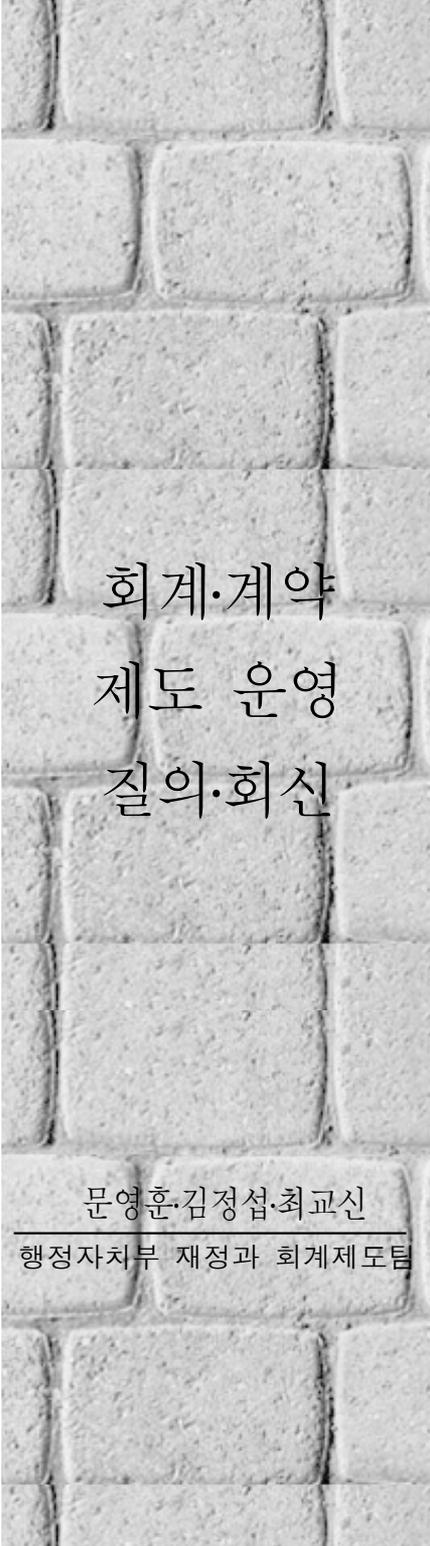


◆ 질의와 회신 ◆



회계·계약 제도 운영 질의·회신

문영훈·김정섭·최교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제도팀

[회계제도관련 질의]

1. 위약금 상계처리 여부

【질 의】

○○시가 음식물쓰레기 수탁처리업체 (주)○○와 협약을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2년간) 맺어 사업시행하고 있던 중 2002년 4월 27일 (주)○○에서 전화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거부 의사를 밝혀 2002년 5월1일부터 다른 업체와 변경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그 후 ○○시에서는 협약서상의 위약금 2개월치 ○○원을 2002년 5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납입 고지 하였으며 (주)○○에서는 2002년 4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을 ○○시에 청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주)○○에서 청구한 처리비를 위약금으로 상계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02년 4월 처리비는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상계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위약금 등의 상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하되 우선 민법 제492조에서 규정한 상계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계를 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쌍방의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하므로, 채권의 종류가 금전채권이면 상

대방도 금전채권이어서 하는 등 채권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셋째, 자동채권(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단, 수동채권(그 상대방의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 상계의 요건 중 첫째, 둘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동채권인 ○○시의 채권 변제기한이 5월말로 수동채권인 (주)○○의 채권의 변제기한인 4월말로 수동채권의 변제기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임.

2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의 해당 여부

【질 의】

다음의 경우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가 인감을 첨부하여 모든 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위임받은 자를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지
2. 채권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지
3.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만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53조는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라 함은 금전급부의 효과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동 채권에 대한 수취인은 채권자 자신은 물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자나 대금수령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됨.

3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질 의】

○○시 주택과는 건축준공(다세대 주택)된 1993년에 상수도사업자로부터 상수도이행보증

금을 받아 현재까지 예치하고 있음

하지만 이행보증금 예치시 상수도 시설공사가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의 비용분담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에 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음

〈갑 설〉

상수도 이행보증금이 1993년도에 예치되었으므로 5년이 경과하면 ○○시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을 설〉

상수도시설 설치가 2001년에 되었으므로, 공사완료 후 5년안에 청구를 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회 신

상수도 이행보증금은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예치받아 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 보증금의 예치목적이 당해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함에 있는 바, 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상수도 사업자는 상수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동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상수도 사업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조례상에 명시된 일정기한(명시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5년 시효 적용)까지 없을 경우에 한해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킬수 있을 것임.

4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 예산과목

【질 의】

○○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예산과목과 관련하여 갑설,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당해연도 분은 세입금 정정으로 반납, 전년도분은 예산에 편성된 반환금 목에서 지출

〈을 설〉

당해연도분, 전년도분 모두 반환금 목에서 지출

회 신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예외인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로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보관금, 예치금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대상임.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할 경우에는 지출예산에 편성된 목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5 새마을금고의 공금지급대행점 업무취급 가능 여부

【질 의】

새마을금고가 재무회계규칙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공금지급대행점의 금융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73조 제1항 규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자치단체 금고업무 일부대행이 허용되어 현재 재무회계규칙 제9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공금지급대행점 업무취급이 가능함.

다만, 공금지급대행계약체결이전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금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함이 바람직 할 것임.

[계약제도관련]

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수년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 증명서(동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하자처리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질 의】

공사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등에 따른 계약이행 방안

【질 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 대표사가 회사사정(부도)으로 시공권을 포기한 경우,

- ① 잔존구성원이 면허·계약이행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고 연대보증인도 없는 경우에 향후 계약이행 방안
- ② 대표사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는 타절준공후 준공금액중 대표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산하고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질의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경부 회계예규)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계약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②에 대하여

-대표사의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이므로 타절준공후 대표사의 준공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면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것은 사법부의 결정 및 판단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임.

4.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에 있어 단독 입찰한 경우의 평가방법

【질 의】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에 분야별 평가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제3조제1항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에 있어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고 시공비율대로 평가해야 할 것임.

5.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질 의】

발주시 설계서에는 모든 항목이 계상되었으나 집계시 일부항목의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는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19조(설계변경등)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는 동요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요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임.

6.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별도 재무제표 인정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있어

- ① 관할세무서에 연말결산서 제출시에는 업체전체의 합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는 지점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점 재무제표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 ②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지점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과목 중 유형자산내 기계장치비가 세무서에 제출한 합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과목의 유형자산내 연구개발설비에 합산 신고했다고 할 경우에 지점의 기계장치비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회 신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제조능력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제7조제2항에 최근 1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말결산서 제출시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2호 및 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7. 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중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 준공한 터널공사에 있어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공정만 하도급한 경우,

- ① 터널부분 전체의 공정을 하수급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② 공동도급 구성원 전체의 하도급실적에 대한 날인 없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인정가능 여부

회 신

◦질의①,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 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하며, 이 경우 출자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8. 시공경험평가 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있어 추정가격이 'A'원이고 3년간 실적누계액이 'B'원인 경우에 평가방법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6>에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은 'B'원/'A'원=0.xxxxxx원×100%=XX.xxxx%로 산정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9. 지역제한경쟁입찰시 공동도급업체(자)의 지역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시·도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공동도급이 가능한 지역업체(자)의 범위

회신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주된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사업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임.

10. 실적발급기관의 오류에 의해 실적증명이 발급된 경우 시공실적증명 보완 가능 여부

【질 의】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에 있어 제한실적 이상인 시공실적을 실적증명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적격심사중 발급기관이 당해 실적증명을 정정통보 하여 시공실적이 제한조건에 미달한 경우에 있어,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실적서류로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정하였으나, 실적증명발급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제15조제1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서류로 보완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인 경우에는 입찰실시후 보완할 수 없을 것임.